

업무의 위탁 대상 기관 및 수탁기관(제37조제3항 관련)

구분	위탁 대상 기관	수탁기관
1.	가. 「기술보증기금법」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나.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다.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 라.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 앙회	중소벤처기업부장관
2.	가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농업협동조 합중앙회 나. 「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에 따 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	농림축산식품부장관
3.	「무역보험법」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	산업통상부장관
4.	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	산림청장 및 시·도지사
5.	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 고중앙회	행정안전부장관
6.	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 조합중앙회	해양수산부장관
7.	「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신관 서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8.	「주택도시보증법」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	국토교통부장관
9.	가.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나. 대부업자(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 호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에 따라 시·도지사 에게 등록한 대부업자만 해당한다)	시·도지사